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기 관 명

제 0000-00000 호 0000.00.00.

수 신: 귀하

제 목: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

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접 수 일 시		사 건 번 호	
주 요 진 행 상 황			
담 당 자		☏ 02-0000-0000	

※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

○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(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)
- 관할 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

○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(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)
-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

○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(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)
- 각급 법원에 신청,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

○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
- 여성 긴급전화(국번없이 1366), 아동보호 전문기관(1577-1391) 등

○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)
- 동부화재,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

○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
-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,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

○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(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·출장소)
-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(손해배상청구,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)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
- 국민신문고 www.epeople.go.kr,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

○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
- www.humanrights.go.kr, 국번없이 1331

○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국번없이 1577-1295)
- 피해자나 가족,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

(기 관 명)

특별사법경찰관 ㊞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